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26.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50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오선미)

가. 제안이유

-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의안건 :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 위탁사업 :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1. ~ 2028. 12. 31.(4년)
(※ 동북합문화센터(18개소) 계약만료일(2028. 12. 31)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체결)

○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 강남구 18개소 동북합문화센터와 세곡커뮤니티센터를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세곡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방식 : 수의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

-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 커뮤니티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관리
- 커뮤니티센터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 조치
-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세곡커뮤니티센터
- 준 공 일: 2020.2.25. (개소일: 2020.6.1.)
- 시설위치: 강남구 헌릉로 590길 68
-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847.27㎡)
- 주요공간

지하1층	1층	2층
·다목적체육관 ·기계실/중앙제어실 ·전기/발전기실 ·지하주차장	·세곡데이케어센터* ·다목적강당 ·더마실카페*	·강의실 2개 ·세곡마루도서관* ·사무실 ·헬스장(목욕탕)

* 세곡데이케어센터 : 별도 위탁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

* 세곡마루도서관 : 별도 위탁 (문화도시과) / 더마실 카페 : 강남자활센터 무상임대 (사회보장과)

-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4.10.30.기준)

강좌 수				월 수강 인원
계	생활·체육	문화·취미	헬스	
34	17	15	2	863명

○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금12,936,668천원 (2025년 예산 책정 금액)
- 최근 3개년 소요비용

(단위: 천원)

세목명	2022	2023	2024
민간이전비	1,103,151	1,159,292	1,267,11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1.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2024. 12. 31. 관리위탁 계약 만료 예정인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의계약으로 강남문화재단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재단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지만, 문화재단 조례 제27조에 따른 본 동의는 사실상 위탁할 사무에 대한 동의와 함께 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구체적인 계약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게 됨)하겠다는 내용까지 동의를 받는 것임.
- 문화재단 조례 제27조에는 문화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경

우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본 동의안에는 ① 위탁사업, ② 위탁기간, ③ 위탁기관, ④ 위탁방식, ⑤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 ⑥ 위탁시설 개요 ⑦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¹⁾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과 비교해 보면 본 동의안에 제출된 사항이 명칭이나 순서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위탁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재단에 대한 대행 또는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동의안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보완할 여지는 있어 보임²⁾.

2. 주요 사항의 검토

가. 위탁의 성격(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세곡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로 다음과 같음.
 - ▶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 ▶ 커뮤니티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장이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제2항 공공위탁), 그 밖의 민간위탁(제3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재단, 공단 등)에 대한 대행, 위탁 업무가 방대해지고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및 위탁 업무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입법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 ▶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관리,
- ▶ 커뮤니티센터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 조치,
- ▶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는바, 행정재산인 세곡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상의 관리위탁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

나. 수탁자 선정방식(수의계약)에 대한 검토

○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강남문화재단에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가 있으므로 적법성은 인정됨.

○ 구청장은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부서 자료 확인 결과 2024년 10월 11일 세곡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기관 선정 평가에서 강남문화재단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평가점수 평균 85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다. 위탁기간 관련

○ 본 동의안에 위탁기간은 2025. 1. 1.~2028. 12. 31.(4년)까지로 제출되었으며, 그 이유를 동북합문화센터 계약만료일(2028. 12. 31.)과 동일한 계약기

간으로 체결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음.

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 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2항에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곡커뮤니티센터는 2020. 6. 1. 개관 시부터 강남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³⁾.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 2024년 7월에 있었던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세곡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회계·지도점검 결과보고>		
□ 세곡커뮤니티센터 지도점검 결과		
점검분야	세부 지적내용	조치사항
회계분야	센터장과 회계담당자의 경우 재정분야에 관여하는 바와 책임이 큰 만큼 보증보험 가입 금액에도 차등을 두어야 하나, 문화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으로 분류되어 최저 금액(일천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보증보험 부보금액(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보조금 규모(2023년 기준 11억원 가량)에 비하여 부보금액이 현저히 낮으므로 증액 권고 요청	권고
□ 세곡커뮤니티센터 성과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프라) 강남문화재단은 모든 동북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 최근 2년 모두 1억원 이상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됨 - (사업활동) 적절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비하며 체육시설 제외하고 낮은 시설 활용도를 보임. 이용자 대상 SMS 서비스 외 별도의 홍보활동 필요 - (사업성과)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수가 모두 증가하였음. 주기적인 가접수를 통해 신규강의를 개설한 노력이 돋보임. 그러나 일부 강의실은 여전히 낮은 공간 활용률을 보여 공간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안전관리 및 비상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어르신복지과 자료 재구성)

3) <세곡커뮤니티센터 위탁 현황>

- 2020. 01.01. ~ 2024. 12. 31. 강남문화재단 위탁

※ 의회 동의 여부: 제280회(2019. 10.)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동의안” 가결

3. 종합의견

-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취미·생활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세곡커뮤니티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바 관리위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강남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려는 부분은 강남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있다는 점,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 18개소 동복합문화센터와 세곡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는 점, 수탁자로서 문화재단의 사무 수행능력, 적정성, 그동안의 운영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다만,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2024. 12. 31. 계약 종료 시기를 목전에 두고 촉박하게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의 행정적 절차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동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끝.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0
----------	-----

제출년월일 : 2024. 11.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동의안건 :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나. 위탁사업 :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

다. 위탁기간 : 2025. 1. 1. ~ 2028. 12. 31.(4년)

(※ 동북합문화센터(18개소) 계약만료일(2028. 12. 31)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체결)

라.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 강남구 18개소 동북합문화센터와 세곡커뮤니티센터를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세곡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마. 위탁방식 : 수의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바.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

-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 커뮤니티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관리
- 커뮤니티센터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 조치
-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사.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세곡커뮤니티센터
- 준공일: 2020.2.25. (개소일: 2020.6.1.)
- 시설위치: 강남구 헌릉로 590길 68
-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847.27㎡)
- 주요공간



지하1층	1층	2층
·다목적체육관 ·기계실/중앙제어실 ·전기/발전기실 ·지하주차장	·세곡데이케어센터* ·다목적강당 ·더마실카페*	·강의실 2개 ·세곡마루도서관* ·사무실 ·헬스장(목욕탕)

* 세곡데이케어센터 : 별도 위탁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

* 세곡마루도서관 : 별도 위탁 (문화도시과) / 더마실 카페 : 강남자활센터 무상임대 (사회보장과)

-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4.10.30기준)

강좌 수				월 수강 인원
계	생활·체육	문화·취미	헬스	
34	17	15	2	863명

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금12,936,668천원 (2025년 예산 책정 금액)
- 최근 3개년 소요비용

(단위: 천원)

세목명	2022	2023	2024
민간이전비	1,103,151	1,159,292	1,267,111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세목명	2025년	2024년	산출근거
민간이전 총계		1,293,668	1,267,111	
인건비	소 계	384,978	371,504	
	기본급	184,001	178,691	
	제수당	69,030	67,419	
	퇴직급여	33,000	33,000	
	복리후생비	63,093	59,410	
	평가급여	29,374	28,664	
	여비	6,480	4,320	
운영경비	소 계	906,690	895,607	
	일반수용비	33,667	29,784	
	전산소모품	2,000	2,000	
	복사용지	198	198	
	학습관운영용품	3,820	3,700	
	기타수용비	2,105	2,105	
	위원회운영수당	900	450	
	임차료	9,720	9,720	
	공공요금및제세	4,867	4,692	
	기타제세	877	877	
	수도광열비	136,410	136,200	
	교육훈련비	1,610	2,190	
	수선유지교체비	36,208	35,859	
	행사비	1,010	50	
	관서업무비	1,500	1,500	
	위탁관리비	515,776	507,149	
	강사료	138,892	129,528	
	직원장려금	300	300	
	시설비	16,830	29,305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강남구 주요 경비 별 예산편성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련 조항

○ 지방자치법

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중 략>
-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별표4.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5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익에 의한 방식

1) 수익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평가기준

- ①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행정9급 권민수(☎ 02-3423-5907)